중소 · 벤처기업 창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사업구상,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국가로부터 창업자금,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등의 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기술개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 1
1. 중소 · 벤처기업 창업 개관 4
1.1. 중소 · 벤처기업 창업 개관 4
1.1.1. 중소 · 벤처기업 개념 4
1.1.2.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5
2. 중소 · 벤처기업의 범위 6
2.1. 중소기업의 범위 6
2.1.1. 중소기업 범위 기준 6
2.1.2.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9
2.2. 벤처기업의 범위 10
2.2.1. 벤처기업의 요건 10
2.2.2. 벤처기업 확인 신청 11
2.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 · 벤처기업 12
2.3.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 · 벤처기업 12
3. 창업 절차 15
3.1. 개인사업자 창업 15
3.1.1. 개인사업자 창업 15
3.1.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17
3.2. 법인사업자 창업 18
3.2.1. 법인의 설립 18
3.2.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21
3.3.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22
3.3.1.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22
3.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25
3.4.1. 4대 사회보험 신고 25
3.4.2. 취업규칙 신고 28
4. 창업 지원 29
4.1.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29
4.1.1.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29
4.1.2. 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29
4.1.3. 그 밖의 창업지원 30
4.2.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30
4.2.1. 창업지원 자금 30
4.2.2.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31
4.3. 창업 시 조세감면 34
4.3.1.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34
4.3.2.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35

1. 중소 · 벤처기업 창업 개관

1.1. 중소 · 벤처기업 창업 개관

1.1.1. 중소 · 벤처기업 개념

중소·벤처기업 개요

중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본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개념**
>
> ·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1쪽).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 ※ 벤처기업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벤처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의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시책의 시행

▪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0쪽).

>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 포털(기업마당, bizinfo)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확인하기
> 기업마당에서는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540여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기업마당 홈페이지(https://www.bizinfo.go.kr/) 참조>

중소·벤처기업 창업관련 기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련 행정처리 기관

▪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한 행정처리 기관으로는 대법원, 법무부, 금융결제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있습니다.

기관명		담당업무	홈페이지
대법원		온/오프라인 상호검색 및 법인설립등기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법무부		공증인조사보고,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법무부 (http://www.moj.go.kr/)
금융결제원		주식납입금 수납,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	금융결제원 (http://www.kftc.or.kr/)
국세청		사업자등록	국세청 (http://www.nts.go.k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복지센터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통합신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보제공

▪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담당업무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회정보, 정책정보 제공	www.mss.go.kr
창업진흥원	창업기회정보, 정책정보 제공	http://www.kised.or.kr/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회사설립정보 및 창업 컨설팅	http://www.startbiz.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확인 정보 제공	sminfo.mss.go.kr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창업정보 제공	http://www.venture.or.kr/

1.1.2.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창업 및 창업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

> ※ 중소기업의 재창업
>
> · 중소기업의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 위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을 개시하는 경우

›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함)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위의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중소 · 벤처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2.1.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됩니다.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 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2쪽).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규모기준

▪ **첫 번째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함)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
>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함)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함):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함)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 √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 ※ **주된 업종의 기준**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두 번째 조건: 상한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참조).

> ※ **자산총액의 구체적 기준**
>
> 위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독립성기준(개인사업자에게는 미적용)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 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주식 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조제5호·제6호).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임원"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함)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함)
   √ 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7조의4 및 별표 1).

›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릅니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위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 이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 관계기업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자회사"라 함)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위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위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관계기업에서의 주된 업종의 기준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의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대상: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중소기업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2면 참조).

※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함)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규모기준

▪ 첫 번째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 위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과 동일함

▪ 두 번 째 조건: 상한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위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기준과 동일함

독립성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14년 4월 14일)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2조].

2.1.2.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의 확인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Q.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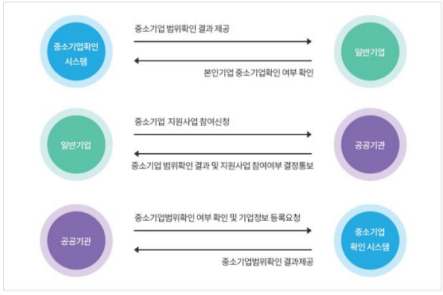
A.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서류(기업정보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수리결과통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및 관계기업서류 등)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 또는 출력된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기업인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직접 근거자료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기준이 다르므로 동 시스템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출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비스구성도>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단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규모기준을 말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세부적인 적용기간

▪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함)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함

>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개정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 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3조].

2.2. 벤처기업의 범위

2.2.1.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벤처기업의 개념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유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제3항의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유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8항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1).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제외>	7	5	5
컴퓨터 및 주변장치	6	6	5
사무용기계 및 장비	6	6	5
전기장비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5	5	5
통신업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10	8	8
정보서비스업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 다음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유형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8항).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은 다음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목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나이스평가정보(주)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평가데이터(주)

› 예비벤처유형의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1항).

2.2.2. 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기업 확인신청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이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전단).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청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연구개발유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나이스평가정보(주)(https://www.niceinfo.c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s://www.kisti.re.kr/) 한국농업기술진흥원(https://www.koat.or.kr/) 한국발명진흥회(https://www.kipa.org/) 한국생명공학연구원(https://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s://www.kitech.re.kr/) 한국평가데이터(주)(http://www.kodata.co.kr/)
예비벤처유형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출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홈페이지 참조>

▶ 확인신청의 철회

▪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5항전단).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5항후단).

벤처기업 요건 심사

▶ 평가의 실시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1항).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2항).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 연구개발유형의 사업성 평가는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단서).

▪ 예비벤처유형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4항 및 별표 5).

▶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다만 신청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에 이의제기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 제2항).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3항).

▶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30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가로조합	세로조합	심볼
		

2.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2.3.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및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
> - "창업중소기업"이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제8항·제9항).
>
> ·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 · 물류산업 중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
> · 금융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무소 운영 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 제외)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유예기간 적용 제외

1.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3. 독립성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창업 절차

3.1. 개인사업자 창업

3.1.1. 개인사업자 창업

개인사업자 창업 개요

개인사업자의 개념

▪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 홈페이지 참조].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 개인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절차메뉴얼」, 24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해당과세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세무처리	√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간단한 세무신고	√ 복식부기의 의무,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 √ 대행의뢰시 수수료가 추가
사업변경처리	√ 사업자변동사항에 대해서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	√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기 처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사업의 인·허가

인·허가 신청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단위 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

›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

› 위의 사업장단위 등록 시 필요서류와 동일한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유의사항

Q.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예전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등록거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 가산세의 부담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3.1.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개요

법인전환의 개념

▪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법인전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홈페이지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②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홈페이지 참조].

▪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홈페이지 참조].

> ※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 절차 및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창업절차 법인사업자 창업 – 법인의 설립>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 ※ **법령용어해설**
>
> ·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6호).

이월과세 적용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5항).

√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5항).

▪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현물출자 및 사업 양도·양수 방법의 요건>

요건	현물 출자	사업 양도·양수
신설법인의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신설법인의 자본금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포괄양수도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월과세 적용신청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 적용 제외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그 밖의 과세특례

-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 제31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함)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부동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말함)을 제외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이월과세 적용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인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
-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이월과세 적용신청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그 밖의 과세특례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을 하는 경우
  -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3.2. 법인사업자 창업

3.2.1.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회사의 분류

-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구분	개념	설립행위	기관구성
합명 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및 제180조)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합자 회사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및 제271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및 제278조)
유한 책임 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87조의2 및 제287조의5)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및 제287조의19)
주식 회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및 제549조)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회사의 설립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180조).
    -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 ※ 합명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합자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287조의5).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출자의 불이행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기관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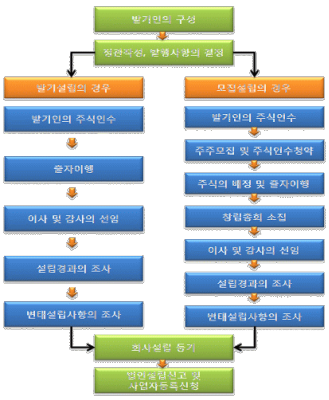
›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Q. 벤처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립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위한 일반서류 외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어떤 벤처확인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제도안내 → 벤처기업확인 요건)하여 해당 유형의 확인기관장에게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장이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1항].

※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유한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

상호표시 주의사항

▪ 상호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동일상호 확인방법(상호검색)
Q.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상호가 많아서 상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참조 >

3.2.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의 인·허가

인·허가 신청

▪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이러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제15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3.3.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3.3.1.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공장설립 개요

공장 및 공장설립의 개념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장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공장의 범위

▪ 공장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의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위의 1.부터 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봄

공장설립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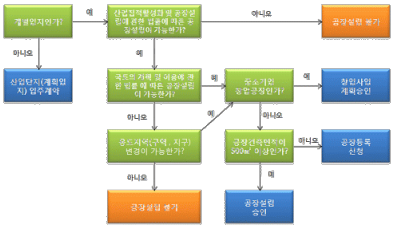
▪ 공장설립은 보통 ① 공장설립 승인, ② 공장건축, ③ 공장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승인절차 개요

▪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절차메뉴얼」, 92면 참조>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 공장입지는 크게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공장입지에 따른 구분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계획입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개별입지)	
설립승인 유형	-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계획승인
대상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모든 공장설립자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근거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산정해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산업용지 내의 공장입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에 공장의 입지는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달라지며, 공장설립에 관한 수많은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 다만,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1호).

> ※ 이하에서는 위의 설립승인 유형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 공장설립계획승인의 개념

› 공장설립계획승인제도(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절차메뉴얼」, 105면).

▪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공장설립계획 사전협의신청서

✓ 공장설립 계획서 1부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신청

›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공장설립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위의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 공장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의 특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 창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서

✓ 공장설립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공장건축

건축허가 및 신고 등

▪ 건축허가

›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 건축신고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등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통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공장설립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항 및 「건축법」 제11조제5항 후단).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제1항)

✓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83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해 위와 같은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맺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공장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공장설립의 승인대상 및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 그 밖의 공장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공장설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의 실험실공장 특례

실험실공장 설치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아래의 5.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9제3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5. 벤처기업의 창업자

▪ 위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4항).

공장의 신청 및 등록

▪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9제1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사업계획서

› 제조시설 배치도

›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위 1.에 따른 학생이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수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9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7항).

실험실 공장의 면적 제한

▪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5항).

▪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함)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8항).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함)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다만,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 ※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격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1. ① 제조업,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Q & A

Q1.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일부를 택시 차고지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다른 공장 또는 다른 건축물과 허가(승인)등의 기준이 다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입주대상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상 입주대상이 아닌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Q2. 지식산업센터에 인쇄·출판업종만 집단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착공하는 경우 비공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와 특정업종의 유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A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를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인쇄·출판업도 동조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Q & A>

3.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3.4.1. 4대 사회보험 신고

4대 사회보험 개요

4대 사회보험의 개요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개념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조).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는 데, 사업소·영업소·사무소·점포·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되며, 나아가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3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신고의무자 및 신고

▪ 국민연금의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G-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신고의무자	-사업장 사용인 또는 지역가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신고기한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범위
직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4.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7. 근로자가 없거나 위의 4.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여기서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분	국민건강보험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1.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2.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신고처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http://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요건
요양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휴업 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장해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간병 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유족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상병 보상 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직업 재활 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2호의5서식).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업주
신고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2. 근로자 고용신고서
신고처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개념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고용보험법」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사업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함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2호의5서식).

구분	고용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업주
신고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고처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적용특례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참조).

3.4.2.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의 개념

▪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사용자는 위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취업규칙 작성 시 의견청취 의무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

단체협약의 준수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4. 창업 지원

4.1.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4.1.1.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 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 참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조제1호].

▪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려면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하므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 참조).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상담회사와의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비 지원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5조).

-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
-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
- 용역의 내용·범위·방법 및 조건
-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
-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 중소기업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6조제2항).

-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 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용역
-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4.1.2. 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입주대상자

▪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 예비창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하며, 초기창업기업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입주자 선정기준

▪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제1항).

▪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제2항).

▪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제3항).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제1항).

창업보육부담금

▪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제1항).

▪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제2항).

-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
-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0조제1항).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0조제2항).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3항).

› 국가가 위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6항).

입주기업의 퇴거 및 사후관리

입주기업의 퇴거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1조제1항).

›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보육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2조).

각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및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Q.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작업장과 기술제공, 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smes.go.kr/binet)에서는 이러한 창업보육 관련하여 기술개발부문, 경영부문, 행정부문, 자금부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www.smes.go.kr/binet) 참조>

※ 2026년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그 밖의 창업지원

대학창업 교육체제 구축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창업자는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창업대학원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제1항 참조).

▪전국 대학이 창업 친화적인 제도 및 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학내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주력산업, 딥테크 등 지원 유형별 우수한 기술,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6쪽).

지원내용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및 성장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6쪽).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제1항).

활동비 지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 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그 밖의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종합계획 및 창업지원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

※ 그 밖에 2026년도 창업지원 사업 현황 및 각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4.2.1. 창업지원 자금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공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쪽).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한도 및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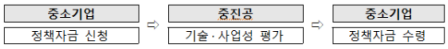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지]에서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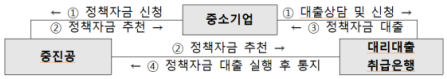
융자방식

▪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으로 구분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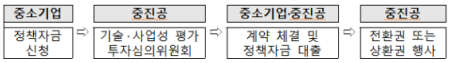
›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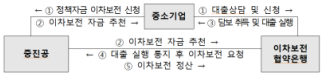
›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이차보전: ①기업이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융자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쪽.>

>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개요

▪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참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창업기업 대상 보증·지원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창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른 청년희망드림보증, 신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6년 업무가이드』, 15쪽 참조).

구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지역성장형 창업	지역정착 창업보증	· 창업 후 1년 이내	· 지원한도 5억(운전)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차감
		지역특장 창업보증	· 창업 후 1~3년 이내	· 지원한도 20억(운전)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3%p 차감
		지역플러 창업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2%p 차감
	고용혁신형 창업	고용촉진 창업보증	· 창업 후 1~3년 이내	· 지원한도 20억(운전)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차감
		고용안전 창업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차감
	선문·기술형 창업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창업 전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10억(운전+시설) · 보증비율 90~100% · 보증료율 0.3~0.7%p 차감
		유망성장초기 창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	· 지원한도 2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3%p 차감
		유망성장도약 창업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2%p 차감
청년희망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 제조업, 유망창업 등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5%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신중년행복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40세 이상 · 제조업, 유망창업 등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차감
금융회사 특별출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창업기업, 신성장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 등	· 신보 (3년 간 적용) 보증비율 90~100% 보증료율 0.2~0.3%p 차감 · 은행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율 0.2~0.5%p 지원

* 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까지 이용 가능

<출처 :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신용보증-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 형태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6년 업무가이드』, 42쪽 참조).

› Start-up NEST(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혁신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비금융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융·복합 육성지원 플랫폼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6년 업무가이드』, 42쪽 참조).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미래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전담 조직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6년 업무가이드』, 43쪽 참조).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혁신적·도전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6년 업무가이드』, 44쪽 참조).



<출처 :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스타트업지원 업무-스타트업 전담 지원프로그램>

보증절차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신용보증-보증이용 절차>

> ※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KODI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 소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背書)를 포함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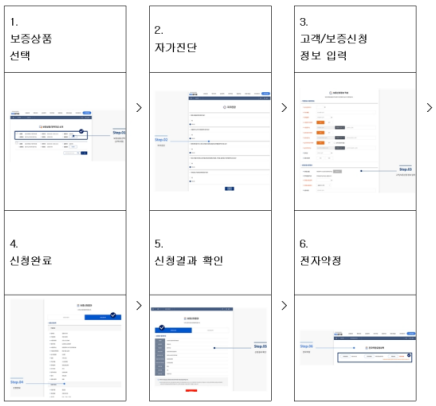
› 소기업 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보증절차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개발로 직접 방문 없이 통합플랫폼을 통해 상담예약, 보증신청 등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출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참조>.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신용보증-보증신청안내>.



※ 그 밖에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

개요

▪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참조).

보증대상

▪ "기술신용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를 위해 다음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신기술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농협은행

√ 수협은행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에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구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대상기업	창업준비단계에서기술평가를실시하여창업자금지원가능금액을제시, 창업즉시당초제시한창업자금보증지원. 창업정보를제공하는창업멘토링지원병행	창업후7년이내기업으로서맞춤형창업성장분야(지식문화산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해당기업	경영주가신청기술분야5년이상의대·중견기업기술경력(연구기술또는기술생산분야) 보유중이거나, 대·중견기업스핀오프창업기업으로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추천받은기업중아래해당기업 재직중이거나퇴직한자로서, 창업예정인예비창업자 대·중견기업퇴직한자인기업 6개월이내상시근로자를신규고용한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	창업후5년이내로, 경영주가만17~39세이하인기술창업기업
보증대상 채무	창업초기소요되는운전자금(창업자금등) 및시설자금(사업장임차자금등)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 한도	-일반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A등급이상: 5억원 -전문가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 7억원, A등급이상: 10억원	상담및기술평가를통해보증한도가정해짐	같은기업당기금보증금액5억원이내. 다만, 창업후3년이하인경우운전자금3억원이내, 시설자금포함시5억원	보증금액3억원이내
우대지원 사항	-100% 전액보증 -0.7%p 보증료감면	-보증비율: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이내 95%) -보증료 창업 후 3년 이내: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창업 후 7년 이내: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보증료: 0.7%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스핀오프(Spin-off)창업기업의 경우 사전한도 부여가능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연0.3% 고정요율 적용 (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증료율 적용) : 95% 적용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출처: 기술보증기금(KIBO) 홈페이지 참조>

▶ 보증절차

• 기술보증의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술보증기금(KIBO) 홈페이지 참조>

> ※ 그 밖에 기술신용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창업 시 조세감면

4.3.1.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2항제3호).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2·제4호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5제2호바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본문).

▪ 다만,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55조)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8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2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32/1,000로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43호, 2024. 6. 4.) 부칙 제2조].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담금 면제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2. 10. 18.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1.12.28.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10.18.) 전에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4조].

1. 이 법 시행 당시(2022. 10. 18.)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 10. 18.)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4.3.2.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개념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특례적용 대상자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위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범위

•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9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6.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7.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5., 6., 7.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증여가능 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증여재산의 범위

•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의5제1항 및 제2항).

1.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공제액 및 감세 범위

•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적용되는 다음의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자금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특례신청

•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6항).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후단).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특례배제 사유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11항).

부과 사유	부과 대상 재산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가산이자

▪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9항).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2

▪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②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

> ※ 그 밖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